##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Question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명 백한 잘못의 정정을 신청하면 잘못된 기재가 바로 정정됩니까?

## Answer

- 출원인이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신청하였어도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인정해야 정정됩니다. 또한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신청하여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7월이 만료되기 전까지 국제사무국에 정정인정 통지가 도달하 여야 정정의 인정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선일로부터 17월경과 후라도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 에 국제사무국에 동지가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 다만 조기국제공개가 청구된 경우에는 조기국제공개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때까지 조약 제64조 (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공개가 행하 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약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이 송달되는 때까지 정정인정의 동지가 국제사무국에 도달하면, 정정인정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 Question

출원인이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서 청구의 범위 일부에 대하여만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국제출월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 Answer

-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의 계속여부 또는 지정관청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송부하는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국제예비심사를 받는 경우에 국제조사를 받지 읺은 청구 항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국의 국내법령에서 "출원인이 특별수 수료를 당해 지정국 특허청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국제출원부분이 당해 지정국에 있어서는 추하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국제출원하면 국제조사용 번역문은 무조건 제출혜야 합니까?

## Answer

-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국제조사용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국제출원을 국어로 하고, 국제조사기관을 오스트리아(AT), 호주(AU)로 한 경우에 국제조사용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Question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Answer

-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 국제조사용 번역문제출서에 번역문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내에 번역문 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출원번역문제출 및 가산료 납부요구를 받게 되며 통지일로부터 1월내 또는 국제출원의 접수일 로부터 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국제출원추하로 간주됩니다.

